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8. 12. 24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0월 2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8년 10월 29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60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('98. 11. 5) 상정  
제61회 정기회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('98. 12. 22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남승운)

### 가. 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주차장 관리의 형평과 효율을 기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주차요금 면제대상 신설
  - 면제대상 :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
  - 면제기간 : 성실납세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유제한)

본 조례안은 국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주차요금 면제의 제도를 자치구조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실납세자에게 1년동안 무료주차할 수 있게 함으로 성실납세자 확산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생각되겠으나 서울시 업무와 국제청 업무는 성격상으로 보아 전혀 다르다고 보며 우리구의 경우 성실납세자가 2~3명에 불과한 데 반해 법의 형평성을 볼 때 다수인에 해당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주차장 운영은 관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이 운영할 때 그들이 불응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안은 서울시 업무 특히 우리구의 세입 예산과도 관련이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됨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0. 28.  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일관성있게 유지하고 주차장 관리에 형평과 효율을 기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주차요금 면제대상 신설(별표1, 비고 제9호)

- 면제대상 :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
- 면제기간 : 성실납세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주차장법 제9조 및 같은법 제14조

※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)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“노상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※ 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) 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노외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나. 합의사항 : 없음.

다. 예산조치 : 필요없음.

라. 조례개정(안) : 따로 붙임.

따로 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1부.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의 비고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[별표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(제2조 제1항 관련)</p> <p>&lt;비고&gt; 1~8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[별표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(제2조 제1항 관련)</p> <p>&lt;비고&gt; 1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</p>